

코로나19 피해회복을 위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



구 미 시

코로나19 피해회복을 위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2.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가.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착한 임대인 등에 대하여 지방세 세제지원을 통해 지역경기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및 장기간의 영업시간 제한으로 고급오락장(유흥시설) 영업자의 경제적 손실이 가중되고 있어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고급오락장의 중과분 재산세 감면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 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공익 및 재난 대응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하고자 함.
- 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시세를 감면하고자 함.

2. 감면대상자

- 가.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 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영업시간이 제한된 업종의 사업자
- 다. 착한임대인
-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 또는 1개월분 이상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제외

- 라. 코로나19 재난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의료기관
- 마. 과세기준일(2022년 6월 1일) 현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제1호 다목2) 및 제2호가목 세율이 적용되며, 전년도 과세기준일과 당 해연도 과세기준일 사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된 사업장이 운영되는 건물 및 토지의 납세의무자
- 사. 영업용 차량
- 2022. 6. 1. 현재 구미시에 등록되어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규정된 영업용 차량 소유자

3. 세목별 감면내용

가. 주민세 사업소분

- 1)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81조제1항 제1호가목 기본세율에 해당하는 2022년도 사업소분 주민세를 감면한다.
- 2)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나목1)과 같은 목4)의 기본세율에 해당하는 2022년도 법인에 대하여 사업소분 주민세를 감면한다.
- 3)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시행한 영업시간 제한 된 업종의 사업소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2022년도 사업소분 주민세를 감면한다.

구 분		시 설 명
영업시간 제한업종	1그룹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기타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나. 재산세(착한임대인)

1) 감면대상자는 과세기준일(2022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임대인
(단, 당초 임대차계약서는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건으로
인하 전 3개월 이상 계약을 유지한 경우에 한한다)

가) 2022년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 또는 1개월분 이상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사실이 확인되는 임대인

나) 임차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2022년도 부과 건축물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를 포함한다)를
임대면적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가) 재산세 감면세율 산출

해당 임대부분 재산세액 × 임대료 인하율

※ 임대료 인하율은 인하액이 많은 3개월 평균 인하 비율을 말한다.

나) 임대료 인하 기간 3개월 미만 시 임대료 인하율 환산식

$\frac{\text{임대료 인하 평균 월 임대료}}{\text{임대료 인하 전 월 임대료}} \times \text{임대료 인하 월 수} \div 3$
--

다) 감면은 아래의 한도내에서 감면한다.

(1) 임대료 인하율은 50%를 한도로 한다.

(2) 1항에 의해 산출된 감면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감면 금액으로 한다.

3)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자

다) 기존에 감면되는 재산세가 있는 경우

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인 경우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인 경우

4) 착한 임대인 감면을 받으려는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재산세(고급오락장 중과분)

1) 중과대상 적용 시의 중과되는 세액을 감면하기 위하여 일반과세
세율 및 세액을 적용한다.

가) 건축물 적용 세율

감면 전 적용세율	감면 후 적용 세율
지방세법 §111①2가목	지방세법 §111①2다목

나) 토지 감면액 산출식

제111조 제1항제1호다목2) 적용세액 - 제111조 제1항제1호나목 적용세액

다) 감면 세율표

구 분	중과세율	일반세율	감면세율
건축물	4%	0.25%	3.75%
토 지	4%	0.2 ~ 0.4%	3.6 ~ 3.8%

라. 재산세(선별진료소)

1) 선별진료소 가설건축물 재산세 감면

가) 코로나19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로 설치한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2022년도 건축물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를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마. 자동차세

- 1) 2022년 제1기분 과세기준일(6. 1.) 현재 구미시에 등록된 영업용 차량(승용, 화물, 승합, 건설기계 등)의 자동차세 연세액을 면제한다.
- 2) 2022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연납하고 1)조건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환급 처리한다.

4. 감면방법 : 직권 또는 신청

5. 기타사항

- 가.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 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 나. 허위로 감면받거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면 세액을 추징한다.
- 다. 착한임대인 감면의 경우에는 부과 후 신청 기간 내 감면신청을 받아
환급처리 한다.

6. 참고사항

- 가. 추계액 : 불 입

나.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 4) 「지방세법」 제75조(납세의무자)
- 5) 「지방세법」 제81조(주민세 사업소분 세율) 제1항1호 및 2호
- 6) 「지방세법」 제111조(재산세 세율)제1항1호다목 및 제2호가목
- 7) 「지방세법시행령」 제122조(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계산)
-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
-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
- 1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11)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 12)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 13)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다. 예산관련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마. 기 타 : 코로나19 지방세입 지원 지침 통보

(도 세정담당관-2314, 2022. 2. 15.)

코로나19 피해회복을 위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착한 임대인, 고급오락장 중과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및 영업용 자동차 소유자 등에 대하여 지방세 세제지원을 통해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감면액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개인사업자 및 법인 주민세 감면은 ‘21년 감면건 참고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사업장에 대한 감면은 ‘21년 감면건 참고
-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21년 감면신청 실적 및 부과건 참고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재산세 감면은 22년 과세표준건 참고
- 영업용 자동차세 ‘21년 감면건 참고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연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세입	감면예상액(a)	2,616,000					2,616,000
세출	소 계(b)						
총 비용 (a-b)		2,616,000					2,616,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연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국 비							
도 비							
시 비		2,616,000					2,616,000
민 간							
기 타							
합 계		2,616,000					2,616,000

5. 부대의견

- 시세 감면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과 지역 경기회복을 위한 것으로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는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탈루세원 발굴 등으로 세원을 확충

6. 작성자 : 세정과 도세계 김정욱(480-6852)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감면대상 및 감면율

구 분	감 면 세 목			비 고
	주 민 세 (사 업 소 분)	재 산 세 (건 축 물)	자 동 차 세	
개 인 사 업 자 · 중 소 법 인	100% 감면 (기본세율)			
영 업 시 간 제 한	100% 감면 (연면적세율)			
착 한 임 대 인		50% 감면 (백만원 한도)		
선 별 진 료 소		100% 감면		
고 급 오 락 장		일반세율 적용		
영 업 용 자 동 차			100% 감면	

2. 감면 예상액

(단위 : 천원)

세 목	대 상 자	감 면 액		비고
		산 출 내 역	세 액	
	합 계		2,616,000	
	소 계		1,305,000	
주 민 세	· 개인사업자	· 17,000건 × 50천원 = 850,000천원	850,000	
	· 중 소 법 인	· 7,000건 × 50천원 = 350,000천원	350,000	
	· 영업시간제한	· 350건 × 300천원 = 105,000천원	105,000	
	소 계		1,031,000	
재 산 세	· 착한임대인	· 100건 × 300천원 = 30,000천원	30,000	
	· 선별진료소	· 차 병원 등 5개소	1,000	
	· 고급오락장	· 464건 유흥중과분	1,000,000	
자동차세	· 영 업 용	· 7,760 대 ('22.03.01 기준)	280,000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적용 대상자·세목·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 「지방세법」

제75조(납세의무자) ②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제81조(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본세율

-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 4) 그 밖의 법인: 5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다. 분리과세대상

- 2)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지방세법시행령」

제122조(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① 법 제127조에서 “영업용”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외의 용도에 제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

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⑳“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소 관 부 서		세 정 과
입 안 자	과 장	황 진 균
	담 당	임 응 건
	담 당 자	김 정 욱 (480-6852)